

동의서 관리 번호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병동채혈, 수술조직지원, 수진유)

인체유래물 기증자	이주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33 전화번호 010-3343-8192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인체유래물 은행	아주대병원 인체자원은행 전화번호 031-219-4391

본 동의서는 귀하가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을 귀하의 역학정보 및 임상 정보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자에게 묻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하며, 귀하는 귀하의 인체유래물을 채취 전에 채취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은 인체유래물은행에 동의한 날로부터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관리·연구·분양에 이용될 것이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인체유래물은 은행의 장이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
4. 인체유래물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자의 임상·역학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과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의 수집될 것이며, 이 경우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5.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은 귀하의 개인식별정보와 분리보관 될 것이며 인체유래물등과 관련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 보존기간이 경과한 인체유래물은 인체유래물은행의 폐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 또는 이관하게 됩니다.
7.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도구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8. 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교부받아야 합니다.

연구목적	(은행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
------	---------------------------

본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관련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및 보관, 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이 본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동의합니다.

인체유래물등 기증자

법정대리인

상담자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